

■ 법률 칼럼

주재원(L 비자) 및 E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증



주재원(L)이나 E(E-2 포함)비자 배우자들은 노동허가증(EAD)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노동허가증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허가증의 발급이 지연되면서 과거부터 일을 해 오시던 직장에서 노동허가증 연장을 받지 못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속출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2년 1월 31일 이후부터 E비자 또는 주재원의 배우자(L-2) 또는 E-2 배우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분들에게 새로운 입국 코드를 부여하고 이 분들의 경우는 노동허가증이 없어도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이민국은 L과 E비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 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I-9 서류 작성 시에 증거 서류로 노동허가증 대신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022년 1월 31일 이후에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입국 시 부여되는 I-94신분 코드를 구체적으로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이 코드를 취업 가능의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은 미국에서 I-539 양식을 통해서 신분을 받은 분들은 이민국에 직접 통보서를 보내고, 미국에 비자로 입국을 한 분들은 국경보호처를 직접 접촉하셔서 입국 코드를 변경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의 참고를 바랍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나의 가치

자주 안타까운 전화를 받는다.

"장의사님 참 어려운 가정인데 장례비를 싸게 해 줄 수 있나요?" "L A에 독거 노인들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싸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이 전화 할 때도 있고 가족들이 전화 하기도 한다. 한다리 건너 며느리가 혹은 사위가 전화 할 때는 남의 일인양 "사는 것이 어렵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고 우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요즈음 매장을 하는 분들이 귀할 정도로 화장이 전반적이다. 그리고 간단한 예식을 하는 화장은 많은 경비가 들지 않는다. 필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드린다. 그리고 전화를 내릴 때 내 마음이 무겁다. 과연 어른의 장례를 싸게 해야 할 만큼 생활이 곤란할까?

미국의 꿈을 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년 수십년을 살았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장례를 구걸하듯이 해야 하나?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기에 이렇게 가난하게 일생을 마쳐야 하나? 분명 넉넉한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살기 바쁘고 죽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에 준비를 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빌 게이츠가 말했다고 기억한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자식을 포함한 제 삼자가 결정하게 된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양로원에 가면 (미국인 양로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양로원 거의 비슷하다) 거동이 불편하여 훨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험상 유추해 본다. 지난 글에서 잠시 사람의 수명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들보다 짧고 부인이 남편보다 몇 살 연하이면 통계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 10년 정도 더 혼자 사시게 된다. 대부분 집에서 혹은 노인 아파트에서 할머니 혼자 사시다가 일상이 어려워지면 자식들과 함께 사는 방

법이 우선인데 불가능(?)한 경우가 되면 양로시설로 가신다. 양로시설로 간다고 맡은 쉽게 하지만 양로시설에서의 생활비는 실로 엄청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비로 양로시설에서 장시간 생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메디칼(Medical)이라고 부르는 저소득 주민이 받는 주정부 혜택은(타주에서는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함) 엄청난 부자도 누릴 수 없는 큰 혜택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본인의 재산을 분배하고 저소득층이 되기를 선택하여 주정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필자는 본인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고 여기며 필요에 따라 자주 양로시설에 간다. 은연 중에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되기도 한다. 자식들이 있으나 멀리 있기에 자주 와보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분도 있고 가족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다고 체념하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차마 말하기도 가슴아픈 경우도 있었다. 필자의 부모님이 계시던 양로원에서는 한 자식이 요구하기를 어른이 돌아가셔도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생의 마지막을 위해 준비가 없고 돈이 없으면 결국 장례마저 삼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구걸하듯 치러야 한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 생각해 볼 일이다.

덧붙여 설명을 한다. 메디칼과 같은 저소득자 혜택을 받을려면 매달 수입이 적어야 하며 재산이 없어야 한다. 생명보험에 있으면 재산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되지만 장례보험은 현재 이만불까지 재산으로 여기지 않아 주정부 저소득 혜택 신청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 떠날 때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결정해 두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제삼자가 해주지 않는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